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행정주사보 임
기제 1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, 통일정책실 및 인도협력국 내의
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
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7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“외국의 통합·체제전환 사례의 조사·연구 및”을 “통일·통합 및 체제 전환”으로, “업무”를 “협력에 관한 업무”로 한다.

10. 통일·통합 및 체제전환 사례의 조사·연구

제8조제6항제16호 중 “육성·운영”을 “운영 총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4 정원 1명(행정주사보 1명)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통일정책실) ① ~ ⑥ (생략)	제6조(통일정책실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⑦ ----- -----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0. 통일 · 통합 및 체제전환 사례의 조사 · 연구</u>
⑧ (생략)	⑧ (현행과 같음)
⑨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⑨ ----- -----.
1. <u>외국의 통합 · 체제전환 사례의 조사 · 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교류 업무</u>	1. <u>통일 · 통합 및 체제전환</u> --- ----- ----- <u>협력에 관한 업무</u>
2. ~ 8. (생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
⑩ (생략)	⑩ (현행과 같음)
제8조(인도협력국) ① ~ ⑤ (생략)	제8조(인도협력국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⑥ ----- -----.
1. ~ 15. (생략)	1. ~ 15. (현행과 같음)
16. 북한이탈주민 <u>전문상담사 육성 · 운영</u>	16. ----- <u>운영 총괄</u>
17. · 18. (생략)	17. · 18. (현행과 같음)
⑦ (생략)	⑦ (현행과 같음)